

과태료의 부과기준 (제40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다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
- 라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2)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 - 3)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·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했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
 - 4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- 5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
가.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나. 삭제 <2021. 2. 19.>	법 제38조 제2항제1호	150만원	250만원	300만원
다. 법 제25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을 받거나 대한민국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	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2	100만원	300만원	500만원

라. 법 제25조제1호의4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식품 명인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	법 제38조 제2항제2호	100만원	200만원	300만원
마. 법 제25조제1호의5를 위반하여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경 우	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3	150만원	300만원	500만원
바. 법 제25조제1호의6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식품 명인의 표시를 한 경우	법 제38조 제2항제3호	150만원	250만원	300만원
사.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비 치·보존하지 않은 경우	법 제38조 제1항제2호	시정 요구	50만원	100만원
아. 법 제26조제6항(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 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조사 등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38조 제1항제3호	100만원	300만원	500만원
자. 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 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거나 우수식품등인 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	법 제38조 제1항제4호	시정 요구	50만원	100만원